

2023년 4월 15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23. 4. 17.(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기간 : 2023. 4. 17.(월) 10:00 ~ 2023. 4. 19.(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23. 5. 8.(월)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 ②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③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리조트 증축공사를 담당한 피고가 공사기간 중 리조트의 객실 및 식당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3】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까지만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②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 뜻하고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문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②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③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문 5】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②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③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바, 무권리자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 6】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7】 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④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의 효력은 그 변제기로 소급한다.

【문 8】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상대방은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③ 진의 아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10】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도 위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경우,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문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는 물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문1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그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13】 혼인과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나,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실익이 있으므로 종료되지 않는다.
- ③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14】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 표시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문15】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제도의 취지상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건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 건련관계가 인정된다.
- ③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둔 경우, 매수인의 위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는 없다.

【문16】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접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공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되지만,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소멸한다.
-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명의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

【문17】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전에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나, 양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양 채무가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 ③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나,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몰랐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문1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가족법상의 행위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어 선의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19】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는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 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 ④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20】 제한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위 ①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문21】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미흡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③ 전자소송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서증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문22】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강제집행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된다.
- ②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단독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전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 ④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문23】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② 특정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 ③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재판외의 방법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소의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다.

【문2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한다면 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
- ② 전자소송 동의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소송 동의가 간주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장소(주소 등)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충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우편송달, 즉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단순히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문25】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소심에서는 소의 취하가 아니라 상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 ③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 ④ 같은 심급이라도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2회의 기일해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6】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과 달리 제1심 중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에,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각각 신청하고, 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27】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② 판결서 말미에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는데 그 명단에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서 포함하였다면 이러한 표기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 丁, 戊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A가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甲, 乙, 丙, 丁, 戊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선정자들이 甲 대신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28】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절차 중단사유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심에서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④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문29】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를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
- ②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므로, 변론재개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항고의 대상이 된다.
- ③ 결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의 원본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재판의 성립 전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성립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고지되었다 하여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④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다.

【문30】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병합사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 병합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만으로 일시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병합뿐만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도 변론의 분리가 허용된다.
- ④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문31】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합의부 사건인 반소가 제기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관할이 생긴 후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다.
- ②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 ④ 본소가 취하되었다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소만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문32】 전부금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 ②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 ③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문33】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본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③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④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이에 준한다.

【문34】 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 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 ③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
- ④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5】 피고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은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하고, 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③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한다.
- ④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문36】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이다.
- ②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 ③ 소송비용 각자부담 판결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없으나, 소가 재판에 의하여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있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문37】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한하여 생기므로, 하급심에서 재판의 일부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하급심에 그대로 계속되며 상소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상고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보정 후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

【문38】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 ② 소송고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 ③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39】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문서 제출자에게 있다.
-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에 한 문서제출명령이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40】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정과 차이가 있다.
- ②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으로 실시하지만, 감정인신문은 법원 주도로 직권신문을 하면서 당사자의 보충신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③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한다.
- ④ 참여사무원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등과 같이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한다.

【문 1】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말한다.
-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번호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2】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거주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문 3】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크’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②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사가 작성한 기사가 특정 제조사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야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4】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③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 5】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6】 증거인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더라도 위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강간과 수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범조경합의 관계이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문 8】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협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9】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② 체포의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 없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더라도, 체포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③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 ④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문10】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 ②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
- ④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시법을 따르도록 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③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문12】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 번호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 ③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소속 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

【문1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 담당 판사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게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송부하여 체포적부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② 강판조각이 사고차량에서 탈거된 보강용 강판에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드려 펴 그 형상에 변형을 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에 해당되며, 임의수사인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위 강판에 칠해진 페인트의 성분을 비교분석한 행위 역시 임의수사인 감정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로 보아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의 경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문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가 그 접수된 때로 보아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문17】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 ④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 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이 정지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문18】 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판사를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역시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진술조력인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고지하는 한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결한 경우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

【문1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결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로서 강제집행 개시를 위하여 이의 송달이 필요하다.
- ②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 ④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므로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문 2】 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고가 있는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 ③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 ④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

【문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상태나 자력,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사유는 현상의 변경 여부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에서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다시 행하여질 경우에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은 있는지 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권원상의 청구권 자체가 기한부·조건부 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문 4】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 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실령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경매절차에서는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될 수 있다.

【문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매수인의 취소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 ②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문 6】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 변론종결 전에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7】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 신탁약정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가능하다.
- ④ 가처분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는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8】 매각허가결정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을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로도 불복할 수 없으며,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9】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②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문10】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또는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정결정에 의해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 ③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승계인은 집행법원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매속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문11】 담보권실행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만,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문12】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 ③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등기의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기입을 해서는 안된다.

【문1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②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면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문14】 압류의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문15】 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 ㉡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임차인
-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
- ㉤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제2경매신청채권자
-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가압류권자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문16】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더라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②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매각을 허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문17】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④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18】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는 없다.
- ④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문19】 가압류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 ㉡ 위 ㉠의 경우에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어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0】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 ㉡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심을 명한 판결금 전액을 공탁한 때에는 추심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 ㉣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거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자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문 2】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면 특정유증이면 모두 상속등기를 거친 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해야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 등기관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거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상속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문 5】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지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주택임차권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는 할 수 있다.
-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6】 보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보정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무려 10일이나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하였다면 그 지연기간이 후순위 권리자의 통상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해서는 안된다.

【문 7】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과 중친회’에서 ‘고령박씨 감사공과 중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거나 대중중을 소중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 8】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역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나,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역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은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9】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번 저당권의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2번 저당권자는 실체법상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권리변경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 부기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건물별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10】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위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갖는다.
-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문12】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법원 공탁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함께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문13】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나,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 ③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 이후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신청취하서 등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 ②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은 포함되나, 가집행선고부 중 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15】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의 신청은 반드시 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피공탁자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할 수도 있다.

【문16】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게 되어 수용되는 부동산의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된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의재결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한 사정만으로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용대상토지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문1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금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 ②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더라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공탁금을 국고수입 납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출금청구를 할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④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된다.

【문19】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20】 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납세담보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丙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인 丙은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023년 4월 15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23. 4. 17.(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기간 : 2023. 4. 17.(월) 10:00 ~ 2023. 4. 19.(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23. 5. 8.(월)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게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②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 뜻하고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문 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가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②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③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문 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 ②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③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문 4】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리조트 증축공사를 담당한 피고가 공사기간 중 리조트의 객실 및 식당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5】 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④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의 효력은 그 변제기로 소급한다.

【문 6】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상대방은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7】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②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③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데, 무권리자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 8】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은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그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10】 혼인과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나,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실익이 있으므로 종료되지 않는다.
- ③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11】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문12】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13】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도 위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경우,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문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는 물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문15】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전에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나, 양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양 채무가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 ③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나,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몰랐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문1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는 피고직격이 없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가족법상의 행위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어 선의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17】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는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 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 ④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18】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제도의 취지상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 ③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둔 경우, 매수인의 위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는 없다.

【문19】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접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공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되지만,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소멸한다.
-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명의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

【문20】 제한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위 ①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문21】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강제집행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된다.
- ②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단독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의 변동은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전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 ④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문22】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② 특정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 ③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재판외의 방법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소의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다.

【문23】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미흡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③ 전자소송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서증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문24】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소심에서는 소의 취하가 아니라 상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 ③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 ④ 같은 심급이라도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2회의 기일해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한다면 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
- ② 전자소송 동의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소송 동의가 간주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장소(주소 등)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충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우편송달, 즉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단순히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문26】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절차 중단사유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심에서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④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문27】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립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
- ②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므로, 변론재개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항고의 대상이 된다.
- ③ 결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의 원본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재판의 성립 전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성립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고지되었다 하여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④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다.

【문28】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1심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병합사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 병합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만으로 일시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병합뿐만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도 변론의 분리가 허용된다.
- ④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문29】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과 달리 제1심 중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에,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각각 신청하고, 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30】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② 판결서 말미에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는데 그 명단에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서 포함하였다면 이러한 표기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 丁, 戊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A가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甲, 乙, 丙, 丁, 戊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선정자들이 甲 대신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31】 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 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 ③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
- ④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2】 피고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은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하고, 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피고가 분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③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한다.
- ④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문33】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이다.
- ②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중국판결과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 ③ 소송비용 각자부담 판결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없으나, 소가 재판에 의하여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있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문3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합의부 사건인 반소가 제기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관할이 생긴 후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다.
- ②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 ④ 본소가 취하되었다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소만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문35】 전부금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역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 ②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 ③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히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문36】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관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본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③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④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이에 준한다.

【문37】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 ② 소송고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 ③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38】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문서 제출자에게 있다.
-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에 한 문서제출명령이라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3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한하여 생기므로, 하급심에서 재판의 일부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하급심에 그대로 계속되며 상소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상고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보정 후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

【문40】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정과 차이가 있다.
- ②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으로 실시하지만, 감정인신문은 법원 주도로 직권신문을 하면서 당사자의 보충신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③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한다.
- ④ 참여사무원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등과 같이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한다.

【문 1】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크’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②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특정 제조사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나.”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③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 3】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말한다.
-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4】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더라도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문 5】 강간과 주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이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문 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7】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② 체포의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 없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더라도, 체포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③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 ④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문 8】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9】 증거인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더라도 위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0】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 ②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
- ④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시법을 따르도록 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③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문1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 담당 판사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게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송부하여 체포적부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문13】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 번호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 ③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소속 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문1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 ④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 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이 정지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② 강판조각이 사고차량에서 탈거된 보강용 강판에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드려 퍼 그 형상에 변형을 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에 해당되며, 임의수사인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위 강판에 칠해진 페인트의 성분을 비교분석한 행위 역시 임의수사인 감정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로 보아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의 경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문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가 그 접수된 때로 보아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1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19】 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판사를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역시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진술조력인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고지하는 한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결한 경우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

【문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결 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문 1】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국제·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채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 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설령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경매절차에서는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될 수 있다.

【문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매수인의 취소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 ②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문 3】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이이의 소의 이유가 된다.
 -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 변론종결 전에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4】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로서 강제집행 개시를 위하여 이의 송달이 필요하다.
- ②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 ④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므로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문 5】 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고가 있는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 ③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 ④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

【문 6】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상태나 자력,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사유는 현상의 변경 여부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에서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다시 행하여질 경우에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은 있는지 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권원상의 청구권 자체가 기한부·조건부 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문 7】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②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문 8】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또는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정결정에 의해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 ③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승계인은 집행법원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매속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문 9】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가능하다.
- ④ 가처분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는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10】 매각허가결정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을 최고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로도 불복할 수 없으며,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1】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②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면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문12】 압류의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문13】 담보권실행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만,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문14】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 ③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등기의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기입을 해서는 안된다.

【문15】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상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④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16】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는 없다.
- ④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문17】 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 ㉡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임차인
-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
- ㉤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제2경매신청채권자
-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가압류권자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문18】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더라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②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매각을 허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거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문19】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 ②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심을 명한 판결금 전액을 공탁한 때에는 추심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 ③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0】 가압류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 ㉡ 위 ㉠의 경우에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어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문 2】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지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는 할 수 있다.
-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3】 보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보정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무려 10일이나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하였다면 그 지연기간이 후순위 권리자의 통상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해서는 안된다.

【문 4】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문 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친 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해야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월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상속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7】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역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나,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역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은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8】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번 지당권의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2번 지당권자는 실제법상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권리변경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 부기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건물별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 9】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거나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0】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법원 공탁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함께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문12】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위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갖는다.
-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문1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채납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게 되어 수용되는 부동산의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된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의재결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한 사정만으로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용대상토지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문14】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5】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 ② 변제공탁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더라도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공탁금을 국고수입 납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지급청구를 할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④ 변제공탁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된다.

【문16】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나,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 ③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 이후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신청취하서 등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 ②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은 포함되나, 가집행선고부 중 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18】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의 신청은 반드시 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피공탁자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할 수도 있다.

【문19】 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국세나 지방세의 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납세담보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丙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인 丙은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문20】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이 이증으로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23년 4월 15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1억 원에 친구인 乙 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 乙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丙은 2022. 1. 15. 乙과 사이에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2. 1.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아래 각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추가된 사실관계) X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乙은 2022. 3. 1. 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이후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2022. 4. 1. 甲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때 丁이 乙의 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경우,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2022. 3. 1. X 토지를 戊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2. 3. 15. 戊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甲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추가된 사실관계) 甲과 乙은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X 토지에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甲이 요구할 경우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乙은 2022. 2. 1.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은 2022. 3. 1. X 토지를 己에게 매도하면서 그 무렵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변경된 사실관계 : 위 기본적 사실관계를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변경한다.)

乙은 2022. 3. 1. X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 庚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이 경우 丙이 甲,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庚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10점]

나. (위 가.항과 독립적임) 만약 丙이 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그러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B는 2020. 1. 10. X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A가 X에 대하여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B는 경영이 어려워져 변제기인 2020. 7. 10.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자, 친구인 C와 통정하여 2020. 7. 1. 자신의 유일한 토지인 甲 토지를 허위로 C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B는 2020. 7. 15. 부도가 났고, A는 2020. 8. 1. X에게 B의 채무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C는 2020. 9. 1. 자녀인 D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2020. 8. 15. B가 C에게 위와 같이 甲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이 되어서야 B에게 甲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2021. 11. 1.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다.

- 1) B를 상대로, 사후구상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청구
- 2) B, C를 상대로, 그들 사이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 3) C, D를 상대로 그들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 취소 청구
- 4) C, D를 상대로 甲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1.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1)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의 사후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4점]

나. 피보전채권 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주장 [4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할 때, A의 B, C, D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및 그 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아래 나, 다, 라. 문항은 피고별로 각각 나누어 실시할 것).

가. B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5점]

나. B, C에 대한 각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 [10점]

다. C, D에 대한 각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 [7점]

라. C, D에 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8점]

3. (추가된 법률관계) B,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E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B와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은 A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 피담보채권 : E의 B에 대한 4억 원의 채권
- B 소유의 甲 토지(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대하여 2018. 1. 1.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 설정
- F 소유의 乙 토지(시가 5억 원, 변동 없음)에 대하여 2018. 1. 1.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 설정
- 공동저당의 취지가 모두 등기되었음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자연인인 甲은 2022. 5. 4.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함). [5점]
2. 乙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로 甲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소 甲 전부 승소). 乙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5점]
3.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甲은 그 후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가.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 나. 甲이 丙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甲만 항소하였다(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甲의 항소에 따라 판결의 확정기 차단되어 항소심으로의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사건 전부’인지, ‘甲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답하시오. [5점]
2. 가. 항소심 법원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고, [5점]
나. 만약 위 가.에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범위 내지 한계를 논하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이유를 논하시오. [5점]
3. 甲이 제출한 항소장 부분은 丙에게 송달되었으나, 乙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甲에게 乙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甲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사망하였는데 甲은 이를 알지 못하고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추가된 사실관계) 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가.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나.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다.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피고 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위 소장부분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나.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2023년 4월 15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3. 4. 15.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가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乙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후 이를 제출하고, 乙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N통신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 받은 다음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내지 않았다.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7]까지 같음).

1.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2. 甲의 위 행위 당시 乙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위 1.의 결론과 차이가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문 2】

甲은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전화로 친동생인 乙에게 “내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乙은 이에 승낙하여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문 3】

甲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고 자녀인 아동 B(만 5세)는 프랑스에서 A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이 B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B를 보호·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A와 연락을 두절 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문 4】

甲은 재력이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X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담보제공 및 허가 등 업무에 관한 지식이 없는 X토지 소유자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A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부업자들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문 5】

甲은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히트’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이하 ‘이 사건 비트코인’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는데, 착오로 이체된 이 사건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그중 29.998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甲에 대한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문 6】

甲은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丙이 乙의 기망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乙, 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문 7】

甲은 A와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사람이다. 甲은 본인이 A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A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甲의 A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2023. 4. 15.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21. 2. 7. 21:10경, 2021. 2. 15. 20:30경, 2021. 3. 1. 22:00경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존속상해 범행(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을 3회 하여서 존속상해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1. 6. 24. 20:30경, 2021. 7. 1. 21:3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이하 '후행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선행사건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검사는 후행 사건의 존속상해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기일에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는 진술을 하였기에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 적법성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는 후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포괄일죄인 상습존속상해죄로 추가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두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습벽이 있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사의 추가기소에 대하여 이증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의 적법성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선행사건에 대하여 2021. 5. 25.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쌍방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후행 사건의 존속상해 범죄사실을 상습존속상해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습벽은 없으나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모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있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경우에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문 2】

상소와 관련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판결 중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로 항소심 판결에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사건의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아니한 채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소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항소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중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는데, 그 상고심은 공소외 1에 대한 무고죄 및 협박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무고죄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까지 포함하여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1에 대한 무고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초 환송 전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를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의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유죄판결의 적법성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10점]

3.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경우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5점]

4.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을 포함한 판결 전체에 대하여 상고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죄의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경우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5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양형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전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항소심은 제2회 공판기일인 2023. 2. 1.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2023. 2. 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이 한 조치의 적법 여부와 그 근거를 적으시오. [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는 2023. 2. 6.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23. 2. 4. 사망하였다는 사망 진단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판결 이유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였다는 내용을 가중적 양형조건 중대한 변경 사유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이 한 조치의 적법 여부와 그 근거를 적으시오. [10점]

【문 4】

소송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주소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2021. 10. 26.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는 않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21. 10. 29. 피고인의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해당 경찰서장은 2021. 11. 23. “위 주거지에 가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대답이 없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아울러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2022. 5.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분, 공판기일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위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적으시오. **[1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인 2022. 6. 17. 10:00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2022. 6. 2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적으시오. **[5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